

## 2022년도 제4회 경상북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변호사)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2 제4회 경상북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예정 분야 및 직무내용

#### 가. 임용예정 분야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부서(기관)
변호사	일반임기제(5급)	1명	임용일부터 2년	경상북도교육청

※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나. 임용분야별 직무내용

	세부내용
(5급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교육활동 보호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li><li>○ 교육활동 침해 사안 현장조사, 법적 검토 및 대응</li><li>○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li><li>○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 및 민원처리, 분쟁 조정</li><li>○ 기타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li></ul>

## 2 응시자격 요건

### 가. 공통요건 (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 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들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나. 응시연령 [ : 면접시험 예정일]

분 야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20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다. 지역·성별: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또는 면제자

라.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야	자 격 기 준
(5급)	<자격 요건>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

### 3 보수 및 복무

가.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 제35조제3항 및 별표13에서 정하고 있는 연봉등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5급(상당)		62,686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복무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공무원 복무에 관한 기타 법령에 따름

###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일
12. 20.(화) ~ 12. 22.(목)	2023. 1. 11.(수)	추후 공고	

※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 나.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기준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합격·불합격 여부만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제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다.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별도 공고

- 개별통보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gbe.kr) / 「정보마당/시험정보/일반직공무원임용」란에 공고
- 최종합격된 사람이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 처리 할 수 있음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2. 12. 20.(화) ~ 12. 22.(목) ※접수시간: 평일 09:00~18:00(12시~13시 제외)

나. 접수장소: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2층 202호 회의실 (☎054-805-3626)

다.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고, 부득이할 경우 ☎054-805-3626으로 유선연락 후 방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원서 접수 마감일(2022. 12. 22.)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표 수신을 위한 반송용 소봉투(등기용 우표 부착, 수신인 주소·우편번호·성명 기재)를 반드시 동봉하고, 접수 후에는 총무과 인사담당(☎054-805-3626)으로 연락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우편번호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갈전리 1161) 경상북도교육청 중무과 채용 담당자 앞 <봉투에 “임기제공무원(변호사) 임용시험 채용서류 재증” 명기>

- 방문 접수: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봉투에 넣어 원서 접수기간 중 근무 시간 내(09:00~18:00)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 유의사항: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응시원서 수정 불가

라. 응시수수료: 10,000원

-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발송 시 응시수수료(우편환)를 동봉하여 발송
- 방문 접수: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봉투에 동봉하여 납부

## 6 제출 서류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서식 1]
2. 응시원서 1부 [서식 2]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작성 후 제출
3. 이력서 1부 [서식 3]
  - 이력서 기재사항 중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공무원인 경우, 이력서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추가 제출
4. 자기소개서 1부 [서식 4]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 5]
  -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용지 3매 이내로 기술하여 제출
6. 변호사 자격증 1부
7.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12개월 이내 발행된 것을 제출
  - 필요 시 성적증명서 같이 제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8.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부서 등이 명확해야 하며,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기재된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최근 12개월 이내 발행된 것을 제출

○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9.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공기관 외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http://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 6]

#### 11.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서식 7]

#### 12.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확인서 1부 [서식 8]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표시하여 제출

#### 13.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 제출 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 ▶ 제출서류 중 공고일 이전 발급된 서류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검토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다.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에 대해 본인의 의사가 있을 시 반환합니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하여 응시자의 면접 점수 및 순위는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재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자. 최종합격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공무원 복무에 관한 기타 법령 등에 따릅니다.

차.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전 12개월 이내 인정

카.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54-805-3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정보마당/시험정보/일반직공무원임용」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서식 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서명
변호사	일반임기제 5급		

**■ 제출목록 (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 변호사 자격증 사본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주민등록초본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하며, 순서대로 편철



(뒷면)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 작 성 요 령 〉

-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 E-mail : 서류전형 합격 및 면접시험일자·장소 등의 연락이 가능한 E-mail 기재
  - ② 전 화 : 응시자 본인과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③ 성 명 : 정자로 기재합니다.
  - ④ 주민등록번호 : 정자로 기재합니다.
  - ⑤ 임용분야 : 변호사
  - ⑥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⑦ 응시수수료: 10,000원
    - 방문접수 시 : 원서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
    - 등기우편 접수 시 : 응시수수료를 우편환으로 동봉하여 우편발송 → 등기우편 접수 후 총무과 인사담당(☎ 054-805-3626)으로 반드시 확인 요망
- 『※응시번호』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수료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임용분야	성명	서명(자필)

<작성 시 아래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 성격의 장단점, 지원동기 등을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체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자간 0, 장평 100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 .

작성자 ○ ○ ○ (서명)

※ 응시번호는 담당자가 기재

# 무수행계획서

응시번호	임용분야	성명	서명(자필)

<작성 시 아래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방향 및 비전 등을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체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자간 0, 장평 100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 . .

작성자 ○ ○ ○ (서명)

※ 응시번호는 담당자가 기재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b>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b>	<b>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b>
<p>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자료로 활용                      ⇨ 일반임기제 응시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 사항 등 채용시 필요한 제반 정보</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자료로 활용                      ⇨ 일반임기제 응시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p>
<p><input type="checkbox"/> 동의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2022. .</p> <p>성명 : (서명)</p>	<p>2022. .</p> <p>성명 : (서명)</p>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확인서

※ 모집 분야별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표시(○)하여 제출

구 분		자 격 요 건	비고
변호사 (5급)	<u>요건</u>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 보유 ( )	<u>자격요건</u> <u>충족한</u> <u>사람</u> 응시 가능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응시자 성명 : (서명)